외국의 세제

OECD 회원국의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 배분

류 금 렬
행정자치부 세제과 세제1담당

Ⅰ. 개관

국가의 통치구조인 각급 정부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① 중앙정부 (federal, central, national government), 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우리 나라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의 사이에 중간단계의 정부(intermediate government)로서 연방국가의 주(state, province, canton 등) 정부 및 단일 국가의 광역자치단체와 ③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앙과 지방(sub-central government)[1]간의 세원의 배분은 나라별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많은 OECD 회원국들의 각급 정부간 세원 배분문제는 정치적 이슈가 되어 왔다. 지방재정의 자주성은 주나 지방정부에 부여된 재정운영의 재량권의 정도에 달려 있다. 본고에서는 주요 OECD회원국들의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 배분과 지방세의 과세권의 행사에 있어 자주성의 정도를 나

1) 여기서 지방이라 함은 중간단계의 정부(주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정부(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타내는 지표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에서 자치단체의 권한범위를 최근 OECD에서 발행한 "지방정부의 과세권(*Taxing Power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에 실린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의 표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에 있어 자치단체[2]의 자주성의 범위를 정리의 편의상 다음과 같이 약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기로 한다.

a : 자치단체가 세율과 과표를 결정
b : 자치단체가 세율만 결정
c : 자치단체가 과세표준만 결정
d : 공동세의 세입배분
  d.1 : 자치단체가 세입 배분 결정
  d.2 :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배분기준 변경
  d.3 : 중앙정부가 입법으로 일방적으로 결정
  d.4 : 중앙정부가 예산 과정의 일환으로 세입 배분
e : 중앙정부가 세율과 과표를 결정

주요 OECD 회원국들의 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 현황의 개요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95자치단체의 지방세 비중과 과세 자주권의 범위

총조세중 지방세 비중(%)		과세 자주권의 범위							
		a	b	c	d.1	d.2	d.3	d.4	e
오스트리아	19								
-지방	8	9	11			81			
-주	10	2				98			
벨기에	28								
-기초	6	13	84				2	1	
-중간	13		3			97			
-광역	10	8	92						
덴마크	31								
-기초	22		96				4		
-광역	9		93						7

2) 여기서는 편의상 "자치단체"로 표기했으나, 정확한 표기는 중앙정부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각급 하위정부(sub-central governments)를 의미한다. 따라서 연방국가의 경우는 주, 주 산하의 지방정부 등을 포함하며, 단일국가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intermediate governments)와 기초단체를 포함한다.

총조세중 지방세 비중(%)		과세 자주권의 범위							
		a	b	c	d.1	d.2	d.3	d.4	e
핀랜드	22								
-기초	22		89				11		
-광역	0	100							
독일	29								
-지방	7	1	52			47			
-주	22					100			
네델란드	3								
-기초	1		100						
-간척위원회1			100						
-광역	0		100						
뉴질랜드	5								
-지방	5	98							2
노르웨이	20								
-기초	13		5				1	94	
-광역	6							100	
포르투갈	6								
-기초	3	49	14						37
-광역	2								100
스페인	13								
-기초	9	33	51			16			
-광역	5	15	7			78			
스위스	38								
-기초	16		97				3		
-주	22	89				6	5		

자료 : OECD, *Taxing Power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p. 14-15.

Ⅱ. 각국의 지방세와 과세 자주권의 범위

이하에서는 <표 1>에서 제시된 나라별 지방세(연방국의 경우 州稅를 포함)와 각 세목별 과세 자주권의 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오스트리아

기초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수의 81%는 <표 2>와 같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공동세의 배

분율을 결정하는 유형(d.2)에 속하는 세목에서 징수된다. 州(Länder)의 경우에는 d.2 유형의 세목이 98%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세목들은 연방정부와 공동세 형태이다. 주와 기초자치단체들에 대한 배분율은 연방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통상 4~5년 주기로 결정된다. 이 과정에는 각급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협의를 통하여 결정이 이루어진다.

오스트리아의 공동세 제도의 특징은 특정세목의 일정비율을 자치단체에 교부세로 이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의 9.2%를 주정부에 교부하는 제도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조세와 연계된 이러한 교부세 제도는 공동세와 차이가 없다.

기초단체가 세율과 과표를 결정하는 유형(a)의 경우에도 무제한의 자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초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는 주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량이 인정된다.

<표 2> '95 오스트리아의 지방세와 과세자주권

(단위:백만쉴링)

세 목 별	a	b	c	d.1	d.2	d.3	d.4	e
기초단체세	8,908	10,918			83,249			
(구 성 비:%)	9	11			81			
소 득 세					5,227			
임 금 세					21,902			
사 업 세					1,467			
자본소득세					2,574			
법 인 세								
이자소득세					4,168			
급 료 세					20,232			
고 용 세	295							
공 한 지 세					76			
토 지 세 A		350						
토 지 세 B		5,083						
토지양도세					5,195			
V A T					20,750			
맥 주 세					606			

세 목 별	a	b	c	d.1	d.2	d.3	d.4	e
와 인 세					17			
발 포 주 세					99			
광 유 세					727			
음 료 세	5,485							
주 류 부 담 금					209			
광 고 세	348							
오 락 세	917							
관 광 세	646							
견 세 (dog tax)	634							
사 용 료·수 수 료	96							
수 익 자 부 담 금	2,037							
주 차 료	2,947							
기 타 조 세	281							
州 稅		1,946			77,791			
(구 성 비:%)		2			98			
소 득 세					5,842			
임 금 세					26,520			
자 본 양 도 세					489			
법 인 세								
이 자 소 득 세					5,342			
상 속 세					321			
V A T					31,372			
맥 주 세					709			
와 인 세					19			
발 포 주 세					116			
주 류 세					2,128			
광 유 세					244			
소 방 세					711			
광 고 세		775						
오 락 세		43						
관 광 세		792						
자 동 차 세					3,978			
수렵·낚시면허료		100						
기 타		236						

2. 벨기에

벨기에는 3단계의 통치구조로 된 연방국가이다. 최상위에 연방정부, 중간단계로 Community와 Region이 있으며,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Community와 Region에 대한 세수배분과 과세권은 벨기에 헌법과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기초단체의 과세 자주권은 헌법과 상위 정부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1) Community와 Region

벨기에는 3개의 Community와 3개의 Region이 있다. Community의 주요 기능은 교육이며 그밖에도 문화・사회분야와 라디오・텔레비젼 및 청소년 보호 등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Region의 주요 기능은 경제정책의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투자 지원, 고용보조, 지방재정, 교통, 환경보호 등이다.

Community의 세입원으로서 공동세(shared taxes)는 전국에 걸쳐 통일된 방식으로 과세되어 전부 또는 일부가 Community에 배분된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세와 VAT가 이러한 형태로 배분된다. 그러나 세수의 배분에 있어 Community의 자주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으며, 세수 배분의 산정시 상관계수(coefficients)는 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그 법은 각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연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상 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배분기준을 정하는 유형(d.2)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Region과 기초단체의 경우는 과표 및 세율, 과표 또는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형(a, b)과 부가세(surcharge)의 형태로 과세되는 세목(b)으로 나누어진다.

3. 덴마크

덴마크의 정부구조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3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출과 세입에서 비교적 자주성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지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인구의 25%를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 자치단체의 경제적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예산과 각종 협정을 통해 경제정책의 조정에도 관여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광역 및 기초단체와 협의를 통해 조정을 거친다. 이러한 조정에는 지출과 지방세의 세수에 대한 권고가 포함된다.

<표 3> '95 벨기에의 자치단체별 과세 자주권

(단위 : 10억 벨기에 프랑)

세목별	a	b	c	d.1	d.2	d.3	d.4	e
기초단체	24.36	162.05				3.69	1.70	
(구성비:%)	13	84				2	1	
소득세		129.55						
법인세		32.49						
재화·용역과세A								
재화·용역과세B						3.69	1.70	
재화·용역과세C	24.36							
Community		14.0			470.2			
구성비		3			97			
소득세					124.4			
VAT					345.8			
라디오·TV면허료		14.0						
Region	28.2	334.5						
구성비	8	92						
소득세		286.0						
재산세		5.2						
상속세		25.6						
거래세		17.7						
음료세	0.6							
게임세	2.2							
기타소비세	24.2							
핀볼머신세	1.2							

자료 : ibid, p.25.

중앙과 지방간의 협정에 있어 자치단체는 국가의 재정정책에 대한 우월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틀 속에서 협의가 진행된다. 그러나 개별 자치단체가 중앙의 권고를 따르느냐 하는 문제는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협정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998년 6월에 1999~2000년도에 적용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서는 지방세율을

동결하고 개별 기초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국가와 지방의 공동세이다. 배분비율은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한다. 중앙정부는 일방적으로 배분율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실제는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표 4>에서 보는 바와같이 d.3의 유형에 가까운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지방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d.2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소득과 부동산에 대해 과세를 한다. 소득세의 과표는 동일하다. 재산세는 토지세와 건축물세(서비스세)의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토지세의 과표는 시장가격(market value)이 되며, 건축물세의 과표는 전체 부동산 시장가격에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시장가격을 공제한 가격(difference value)으로 한다. 건축물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용 건축물과 공공용 건축물(public buildings)이다.

1) 광역단체세

광역단체는 매년 지출규모를 감안하여 소득세율을 결정한다(b유형). 재산세의 과표와 광역단체의 재산세율(현재 1%)은 입법과정을 통해서 정해진다. 광역단체의 재산세(토지세)의 세율이 중앙정부의 법률로서 정해진다는 점이 기초단체의 재산세와 지방소득세와 다른 점이다. 광역단체의 재산세는 자주성의 정도로 볼 때 e유형에 속한다.

2) 기초단체세

소득과세로 얻어지는 세수는 국가와 기초단체의 공동세가 되며, 과표와 세율은 법으로 정해진다. 기초단체는 3분의 1을 배정받게 된다. 이러한 조세들은 d.3 유형에 속한다.

배분되지 않는 소득세(unallocable income taxes)는 특정한 경우에 부과되는 농업용 부동산에 대한 소득세를 포함한다. 이 세금은 중앙정부와 기초단체에 똑 같은 비율로 배분되며 d.3의 유형에 속한다. 법인세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기초단체간에 배분되며 기초단체에 대한 배분율은 12%이다. 법인세의 자주성은 d.3의 유형에 속한다. 기초단체의 세원으로서 세수가 미미한 것은 특정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인데 과표는 법으로 정해지고 세율은 자치단체가 정한다. 이 경우는 b와 d.3의 양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 '95 덴마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

(단위: 10억 kroner)

세목별	a	b	c	d.1	d.2	d.3	d.4	e
기초단체세		107,829				4,297		57
(구성비:%)		96				4		
소득세		100,116				2,011		
법인세		5				2,267		
비배분소득세						19		
토지세		6,995						
건물세		89						
면허료		84						
육류규제세								57
광역단체세		41,495						3,161
구성비(%)		95						7
소득세		41,495						
토지세								3,161

자료 : ibid. p. 34.

기초단체의 토지세의 과표는 법으로 정해진다. 세율은 최저세율(minimum rates)과 최고세율(maximum rates)의 범위내에서 기초단체가 정한다(b유형).

4. 핀랜드

핀랜드의 정부 계층구조는 중앙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로 되어 있다. 1997년 현재 기초단체의 세입중 지방세는 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세가 14%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단체의 지방세는 <표 5>와 같이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견세(dog license tax)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세의 과표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세율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재산세의 세율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초단체가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단체의 재정적 자주성은 세율의 결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된다.

법인세수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교구(church parishes)의 공동세로서 1999년 현재의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비율은 40%이다. 이 배분비율은 국회에서 결정

<표 5> '95 핀랜드의 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

(단위: 백만 markkas)

세 목 별	a	b	c	d.1	d.2	d.3	d.4	e
기 초 단 체 세		49,462				6,026		
(구 성 비:%)		89				11		
소 득 세		46,085						
법 인 세						6.026		
재 산 세		2,624						
견 세		33						
광 역 단 체 세	6							
(구 성 비:%)	100							
각 종 소 비 세	6							

자료 : ibid, p.36.

된다. 기초단체별 배분율은 당해 지역 내에 위치한 기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핀랜드의 광역단체(Åland)에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있다. 핀랜드 국회는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광역단체의 의회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 지방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신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광역단체세와 기초단체세로서 추가적인 소득세, 임시 소득세, 사업세, 오락세 등을 신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는 기초단체의 소득세를 신설하였다. 광역단체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예산에 의해서 배정하는 금액을 예산으로 사용하는 결과 재정적 자주성은 제한되어 있다.

5. 독일

연방국가인 독일에서 州는 과표와 세율을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나 주는 조세법의 입법과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방 상원(Bundesrat)은 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상원을 통해 주는 조세입법을 추진하기도 한다.

주는 다음 세목에 대한 과세권을 갖는다.

○ 부유세('97년부터 폐지)

○ 상속・증여세

○ 부동산이전세
○ 맥주세
○ 화재보험세
○ 복권・도박세
○ 자동차세

이외에도 주는 급여원천징수세, 소득세, 이자소득세(법인분 제외)의 42.5%를 공동세로서 세입을 배분 받는다. 법인분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서 배분 받는다. 그 밖에도 부가치세의 44%, 지방사업세의 5%를 배분 받는다.

기초단체가 과표와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세목(a 유형)은 세수의 비중이 미약한 편이다(<표 6> 참조). 기초단체 세수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세목은 지방사업세, 소득세, 부동산세이다. 지방사업세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와 사업 자본에 대한 과세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세의 세율은 법률에서 정한 세율에 승수(multiplier)를 적용하여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b 유형). 부동산세의 경우도 같다. 지방사업세는 연방, 주, 기초단체의 공동세이다.

이 방식은 표준조세 수준(standard level of tax)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기초단체세인 지방사업세가 공동세가 됨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단체들은 급여원천징수세 및 부과방식 소득세의 15%를 배분 받는다.

이 밖에도 기초단체는 이자원천징수세의 12%를 배분 받는다. 사업세와 소득세수중 자치단체가 배분 받는 비율은 매년 예산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독일 헌법은 배분과정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1998년에 지방사업세는 폐지되었다. 이에 따른 세수 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2.2%가 자치단체에 배분된다.

<표 6> '95 독일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단위 : 백만Mark)

세목별	a	b	c	d.1	d.2	d.3	d.4	e
기초단체세	1,102	51,268			46,337			
(구성비 : %)	(1)	(52)			(47)			
급여세					42,405			
부과분소득세					2,099			

세 목 별	a	b	c	d.1	d.2	d.3	d.4	e
사 업 세 A		19,989						
이자원천징수세A					1,537			
사 업 세 B		12,780						
부 동 산 세		13,744						
사 업 세 C		5,115						
부 동 산 거 래 세					296			
음 료 세	34							
오 락 세	469							
견 세	291							
기 타	308							
주 세 (구 성 비 : %)					291,228 (100)			
소 득 세					120,148			
부 과 분 소 득 세					5,949			
배 당 소 득 세					8,457			
사 업 세 A					1,126			
이자원천징수세A					4,354			
법 인 세					9,068			
사 업 세 B					720			
이 자 원 천 징 수 세					1,281			
부 유 세 A					3,456			
부 유 세 B					4,399			
사 업 세 C					288			
상 속·증 여 세					3,549			
부 동 산 거 래 세					6,067			
부 가 가 치 세					103,234			
특 별 물 품 세					1,779			
화 재 보 험 세					762			
복 권·도 박 세					2,785			
자 동 차 세					13,806			

자료 : ibid, pp. 38-39

독일의 1997년 각 정부간 공동세(joint taxes) 배분 비율은 <표 7>과 같다.

1995년 독일의 각급 정부의 전액자체세(exclusive taxes)와 공동세(shared taxes) 구성비는 <표 8>과 같다.

<표 7> '97 공동세 배분 비율

공 동 세	연 방	주	기초단체
소 득 세	42.5	42.5	15
법 인 세	50.0	50.0	0
부 가 가 치 세	50.5	49.5	0
지 방 사 업 세	5	15	80

자료 : IMF, *Fiscal Federalism in Theory and Practice,* p.230.

<표 8> '95 각급 정부 세원별 구성비

세 원 별	연 방	주	지 방
전액자체세	30	9	5
공 동 세	59	63	26

자료 : ibid, p.231.

6. 네델란드

네델란드의 정부구조는 중앙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의 3계층으로 되어 있다. 그밖에도 자주 과세권을 갖는 간척위원회(polder board)가 있다. 동 위원회는 댐의 관리, 저지대의 해수면 관리, 폐수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제한된 수의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다. 지방세로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재산세이다. 재산세는 소유자(owner)에게 과세되는 재산세와 임차인(renter)에게 과세되는 재산세의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유자로서 사용자(owner-occupier)인 경우에는 두 가지의 재산세가 모두 과세된다. 재산세의 과표는 추정시장가격(estimated market value)이다. 자치단체는 평가감독위원회(Valuation Supervision Board)의 지도·감독을 받아 과세대상의 평가를 하며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b 유형). 재산세 과표는 간척위원회가 과세하는 세목의 과표로도 활용된다. 간척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세율을 결정하여 인두세와 토지세를 과세하고 있다(b 유형).

1995년 광역단체는 유일한 세목으로서 국세인 자동차세에 부가세(surcharge)를 부과하고 있다. 광역단체는 국가에서 정한 상한세율(ceiling)의 범

<표 9> '95 네델란드 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

(단위 : 백만 Guilder)

세목별	a	b	c	d.1	d.2	d.3	d.4	e
기초단체세		4,260						
(구성비:%)		(100)						
재산세		4,040						
관광세		110						
견세		80						
비주민세 (non-residents tax)		20						
기타		10						
간척위원회세		2,700						
(구성비:%)		(100)						
재산세		700						
수질오염세		2,000						
광역단체세		210(100)						
자동차부가세		210						

자료 : OECD, *Taxing Power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p.50.

위 내에서 부가세의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표 9> 참조).

7.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정부계층 구조상으로는 광역단체가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rates라 불리우는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다. 재산세는 제한세율(maximum rates)를 정해 두고 과세하게 된다. 전국 재산세 평균세율은 제한세율의 50% 수준이라고 한다.

rates는 3가지 형태로 과세된다. 일반재원 조달을 목적으로하는 일반 rates, 부채위기에 처한 경우에 부과하는 특별 ratets, 분리 rates는 목적세적 성격으로서 쓰레기 수거·처리 등의 용도에 사용한다.

과표는 지방의회가 과세대상 재산의 자본가격(capital value),토지가격(land value), 연간 임대소득(annual value) 중에서 재량으로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토지가격이며 다음으로는 재산이 발생시키는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한 자본가격을 과표

로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임대소득과 자본가격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의회는 세율을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재산세는 과세권의 자주성의 범위로 본다면 a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과표 결정에 있어 자율성의 범위가 넓고, 세율 결정에 있어서도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 rates의 경우에는 제한조차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뉴질랜드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소비세로는 석유세(petroleum tax)가 있다. 석유세는 도매업자가 판매시에 과세된다. 석유세 징수를 위해 자치단체들은 몇 개의 단체끼리 그룹을 지어 租稅區(tax region)를 설치하게 된다.

이 조세구 내에서는 1개 자치단체가 부과·징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징수된 세수를 전년도 재산세 징수액의 비율에 따라 구성원인 각 자치단체에 배분하게 된다. 세율은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에 규정한 3등급의 세율을 기준으로 각 조세구에서 자율 결정한다. 통상 각 조세구에서는 최고 등급의 세율을 기준으로 과세해왔다. 석유세의 과세 자주성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세율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e유형에 속한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는 특정 수자원 서비스를 위해 水稅(water rates)를 과세하고 있다. 수세는 분리rates와 같이 제한 세율이 없고 자치단체가 과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과세권의 자주성은 a유형에 속한다(<표 10> 참조).

<표 10> '95 뉴질랜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

(단위: 10억NZ$)

세 목 별	a	b	c	d.1	d.2	d.3	d.4	e
지 방 세	1770.6							33.1
(구 성 비:%)	(98)							(2)
재 산 세	1645.9							
소 비 세								33.1
수 세	124.7							

자료 : ibid, p. 56.

8.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정부 계층 구조는 중앙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로 되어 있다. 지방세는 소득세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소득세는 단일세율(flat rate) 28%로 과세되어 중앙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각각 배분하게 된다. 배분은 매년 의회가 예산의 한 부분으로 결정한다[3](<표 11> 참조).

<표 11> '99년 노르웨이의 정부간 소득세 배분

정 부 별	배분세율
소 득 세 율	28%
국 가	9
광 역 단 체	6.6
기 초 단 체	11.5

자료: ibid, p.59.

또 기초단체는 평가된 순재산에 0.7%의부유세를 과세한다. 제한세율(maxi--mum rate)은 의회에 의해서만 변경될 될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수의 증가에

<표 12>'95 노르웨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

(단위 : 백만 Kroner)

세 목 별	a	b	c	d.1	d.2	d.3	d.4	e
기 초 단 체 세		2,792			431		48,006	
(구 성 비 : %)		(5)			(1)		(94)	
소 득 세							39,217	
법 인 세							4,129	
재 산 세		2,792						
부 유 세 A							3,896	
부 유 세 B							664	
소 비 세					431			
광 역 단 체 세							24,532	
(구 성 비 : %)								
소 득 세							2.065	
법 인 세							22,467	

자료 : *ibid,* p.60.

3) 1998년도부터 법인세(corporate tax)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지 않고 국가 세입이 된다.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다. 기초단체는 주택, 수력발전소, 상업용 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도시지역에서만 과세된다. 기초단체는 평가액의 0.7%범위 내에서 재산세율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주택에 한해서는 과표를 경감할 수 있다. 재산세의 과세 자주성은 b유형에 속한다.(표 12> 참조)

9. 포르투갈

포르투갈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단체의 과세권의 자주성의 정도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에 차이가 있다. 기초단체는 자주성이 높은 반면, 광역단체는 중앙정부가 예산 과정의 일환으로 세입을 배분하는 형태인 d유형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3> 참조).

<표 13> '95 포르투갈의 자치단체별 과세 자주권

(단위 : 백만 escudos)

세 목 별	a	b	c	d.1	d.2	d.3	d.4	e
기초단체세	88,613	25,144					67,158	
(구성비 : %)	(49)	(14)					(37)	
법인세		25,144						
재산세	62,157							
자산거래세							56,352	
특별서비스세	26,456							
자동차세 A							7,564	
자동차세 B							3,242	
광역단체세							113,054	
(구성비 : %)							(100)	
소득세							29,515	
법인세							5,718	
비배분세 (Unallocable)							152	
재산세							160	
부가세							55,637	
판매세							2	
소비세							17,589	

세 목 별	a	b	c	d.1	d.2	d.3	d.4	e
특별서비스세							2,239	
기타소비세							1,437	
기타이용세							129	
기타사업세							42	
기 타							434	

자료 : ibid, p. 63.

10. 스페인

1978년에 스페인은 민주 헌법을 채택하였다. 이 헌법은 정부의 계층구조를 중앙정부, 광역단체(regions), 기초단체의 3단계로 구분하는 유사연방체제(quasi-federal system)로 규정하고 있다.

1978년 이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는 도(provinces)와 기초단체(municipalities)의 2계층 구조로 되어 있으나, 새 헌법에서는 새로운 광역단체(regions)를 설치하였다. 그 후 도는 개편과정을 거쳐 자치 광역단체(regions)로 되었다. 현재 스페인에는 17개의 광역단체와 2개의 시(Ceuta & Melilla)가 있다.

스페인 헌법은 광역단체의 과세권을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광역단체는 중앙정부가 이미 과세한 세원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 또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데 장애가 되는 세제를 채택할 수 없고, 그밖에도 광역단체의 자주 과세권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스페인의 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의 정도는 <표 14>와 같다

11. 스위스

스위스는 연방국가로서 26개의 주(canton)와 약 3,000개의 기초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는 주별로 제정된 세법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세, 부유세, 양도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기초단체들도 자율적인 과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립세 또는 州稅에 부가세 (additional centimes) 형태로 과세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과세권은 연방헌법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이는 자치단체간 과세권의 난맥을 방지하고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헌

<표 14> '95 스페인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기초단체> (단위:10억 페소)

세목별	a	b	c	d.1	d.2	d.3	d.4	e
기초단체세	680.44	1,039.16			318.87			
(구성비 : %)	(33)	(51)			(16)			
소득세	341.30							
법인세	58.10							
기타소득세	5.10							
부동산세		469.90						
부유세	6.90							
상속세	3.00							
자본이전세및증지세					27.00			
부동산양도세	74.00							
특별기부세	22.30							
부가가치세		26.30				277.37		
사업세 (turnover tax)	1.50							
수입세 A	2.40	9.70						
기타세	10.30							
rehqkrtp	9.60							
전화세	22.70							
자동차등록세					8.80			
수입세 B		15.30			6.50			
자동차세 A		124.90						
자동차세 B		31.30						
수수료 (econ.act.fee)		248.90						
건설세		103.80						
건물허가세	39.20							
기타수수료	76.10							
잡수입	7.94	11.76						

자료 : *ibid,* p.68.

<광역단체>

세 목 별	a	b	c	d.1	d.2	d.3	d.4	e
광역단체세 (구성비 : %)	164.60 (15)	77.90 (7)			878.87 (78)			
소 득 세	76.33							
법 인 세	20.77							
부 유 세	3.32				66.07			
상 속 세	0.71				117.89			
자본이전세 및 증지세					452.75			
부 가 가 치 세					75.48			
Can.Isl.Ind.tax		30.56						
사 업 세					6.81			
석 유 세		37.73						
수 입 세 A		0.62						
기 타 세	33.48							
도 박 세	28.25				156.06			
전 화 세	0.31							
자동차등록세					3.81			
수 입 세 B		1.23						
수 수 료		7.18						
잡 수 입	1.43	0.58						

자료 : ibid, p. 69

법은 연방정부나 주정부는 상호간에 동일한 세원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예, 소득세).

주는 과세자주권(tax sovereignty)을 가지고 자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할 수 있으며 징수된 세입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4) 주정부의 과세자주권의 폭은 상당히 넓은 편이다. 연방정부는 일부 세목에 대해 배타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세목은

4) 스위스의 주는 연방정부와 함께 주권(sovereignty)을 공유한다. 이는 다음의 스위스 연방헌법 제3조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다. *"The cantons are sovereign to the extent that their sovereignty is not limited by the Federal Constitution and , as such, they shall exercise those rights that are not delegated to the federal authority."*

부가가치세, 관세, 담배세, 특별소비세 등이 있다.

기초단체들은 주와 같이 과세자주권이 주어지지 않고 주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단지 세금을 인상만 할 수 있다.

1) 주세

주세와 기초단체세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세목으로 되어 있다. 이는 기초단체가 주세의 부가세로 과세하는 형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州稅의 종류

○ 소득세
○ 이윤 및 자본세
○ 상속・증여세
○ 양도소득세
○ 복권세
○ 자동차세
○ 견세(dog tax)
○ 오락세
○ 인지세
○ 간판세
○ 거래세
○ 부동산세

2) 기초단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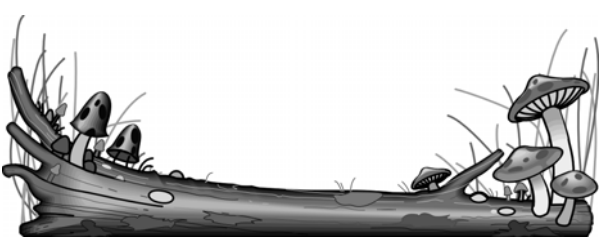
○ 소득세
○ 이윤 및 자본세
○ 상속・증여세
○ 양도소득세
○ 복권세
○ 양도소득세
○ 영업세
○ 견세
○ 오락세
○ 거래세
○ 부동산세